학교법인 고운학원

2022(학)년도 7차 이사회 회의록

구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8 인	2 인
재적임원	7 인	2 인
참석임원	6 인	0 인

1. 일　　시 : 2022년 9월 28일(수) 18:00 ~ 19:00【회의소집통보일 : 2022년 9월 20일(화)】

2. 장　　소 : 올림피아센터 빌딩 5층 (역삼동)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임원

- 이 사(6인) : 이찬영, 여상원, 정진호, 강인수, 변윤석, 임수
- 감 사(0인) :

○ 결석임원

- 이 사(1인) : 최원준
- 감 사(2인) : 장상용, 임진옥

4. 안　　건

1) 수원대학교 교원 신규임용(안)
2) 수원대학교 대학원 학칙 변경(안)
3) 수원대학교 교원 징계 의결(안)
4) 수원과학대학교 직원 징계 의결(안)
5) 법인 정관변경(안)

간 서 명			

5. 회의내용

의장 이찬영 : 변윤석 이사와 임수 이사는 일신상의 이유로 원격영상 회의로 출석하였음을 알리고,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 제32조에 따라 재적이사 7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

1) 수원대학교 교원 신규임용(안)

의장 이찬영 : 첫 번째 상정 안건은 수원대학교 교원 신규임용(안)이라고 말하고,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간　　사 : 정관 제43조에 따라 2022년 10월 1일자 신규임용 교원 4명이 제청되었다고 알리고, 배부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다.

☞ 별첨 : 수원대학교 교원 신규임용 명단

이사 여상원 : 원안대로 통과를 제의하다.

이사 전 원 : 전원 찬성을 표하다.(찬성 6인, 반대 0인)

의장 이찬영 : 참석이사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원대학교 교원 신규임용(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알리고, 별첨에 대하여는 비공개하기로 의결하고, 다음 안건을 진행하다.

간 서 명	여상원	강이수	김지원

2) 수원대학교 대학원 학칙 변경(안)

의장 이찬영 : 다음 상정 안건은 수원대학교 대학원 학칙 변경(안)이라고 말하고,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간　　사 : 수원대학교 뷰티사이언스대학원 폐지에 따른 학칙 변경이라고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자료를 참조할 것을 알리다.

☞ 별첨 : 수원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 신구대비표

이사 강인수 : 원안대로 통과를 제의하다.

이 사 전 원 : 전원 찬성을 표하다.(찬성 6인, 반대 0인)

의장 이찬영 : 참석이사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원대학교 대학원 학칙 변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알리고, 다음 안건을 진행하다.

간 서 명			

☞ 별첨 : 수원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2조(교육목표) 각 대학원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⑬생략 ⑭**뷰티사이언스대학원 : K-Beauty 활성화, 뷰티관련 시장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⑮ 생략	**제2조(교육목표)** 각 대학원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⑬생략 ⑭ 삭제 ⑮ 생략	내용 삭제
제5조(대학원 명칭 및 수업) ①수원대학교 대학원은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으로 구분하며 특수대학원은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 공학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호텔관광대학원, 미술대학원, 음악대학원, 고용서비스대학원, 스포츠과학대학원, 인공지능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뷰티사이언스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글로벌창업대학원이 있다. ② 생략	**제5조(대학원 명칭 및 수업)** ①수원대학교 대학원은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으로 구분하며 특수대학원은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 공학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호텔관광대학원, 미술대학원, 음악대학원, 고용서비스대학원, 스포츠과학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글로벌창업대학원이 있다. ② 생략	내용 삭제
제13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생략 ②특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 6월로 한다. 다만,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공학대학원, 호텔관광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미술대학원, 음악대학원, 고용서비스대학원, 스포츠과학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뷰티사이언스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글로벌창업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2년으로 할 수 있다. ③ ④삭제	**제13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생략 ②특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 6월로 한다. 다만,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공학대학원, 호텔관광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미술대학원, 음악대학원, 고용서비스대학원, 스포츠과학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글로벌창업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2년으로 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내용 삭제

간 서 명			

3) 수원대학교 교원 징계 의결(안)

의장 이찬영 : 다음 상정 안건은 수원대학교 교원 징계 의결(안)이라고 말하고,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간　　사 : 감사원 실지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수원대학교 교원에 대하여 징계 의결하는 안건이라고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자료를 참조할 것을 알리다.

☞ 별첨 : 수원대학교 교원 징계 의결서

이사 정진호 : 원안대로 통과를 제의하다.

이 사 전 원 : 전원 찬성을 표하다.(찬성 6인, 반대 0인)

의장 이찬영 : 참석이사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원대학교 교원 징계 의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알리고, 별첨에 대하여는 비공개하기로 의결하고, 다음 안건을 진행하다.

간 서 명			

4) 수원과학대학교 직원 징계 의결(안)

의장 이찬영 : 다음 상정 안건은 수원과학대학교 직원 징계 의결(안)이라고 말하고,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간　　사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따라 수원과학대학교 직원에 대하여 징계 의결하는 사안이라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할 것을 알리다.

☞ 별첨 : 수원과학대학교 직원 징계 의결서

이사 강인수 : 원안대로 통과를 제의하다.

이 사 전 원 : 전원 찬성을 표하다.(찬성 6인, 반대 0인)

의장 이찬영 : 참석이사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원과학대학교 직원 징계 의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알리고, 별첨에 대하여는 비공개하기로 의결하고, 다음 안건을 진행하다.

간 서 명			

5) 법인 정관변경(안)

의장 이찬영 : 다음 안건은 법인 정관변경(안)으로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간　　사 : 교육부 시정요구 및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정관개정 사유 발생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자료를 참조할 것을 알리다.

☞ 별첨 : 법인 정관 개정 신·구 대비표

이사 정진호 : 원안대로 통과를 제의하다

이 사 전 원 : 전원 찬성을 표하다.(찬성 6인, 반대 0인)

의장 이찬영 : 참석이사 만장일치 찬성으로 법인 정관변경(안)이 통과되었음을 알리다.

간 서 명			

☞ 별첨 : 법인 정관 개정 신·구 대비표

정관개정 신·구 대비표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25조(임원선임의 제한) ①~② 생략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제25조(임원선임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자라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	사립학교법 제21조 제3항 반영
④~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④~⑥ 현행과 같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 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 자	사립학교법 제21조 제7항 반영
제34조(이사회 소집) ① 생략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4조(이사회 소집)**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밝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사립학교법 제17조 반영

간 서 명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34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의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4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해당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의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반영
제43조(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고 임기는 4년 이내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생략	**제43조(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2020년 종합감사 처분사항 반영
제43조의4(정년) 교원의 정년은 만65세가 되는 학기의 말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 및 부총장은 예외로 한다.	**제43조의4(정년)** 교원의 정년은 만65세가 되는 학기의 말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부총장 삭제
제45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14 생략	**제45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5 현행과 같음 6.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14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7~14 현행과 같음	사립학교법 제59조 제2항 반영
제59조(교원 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생략	**제59조(교원 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현행과 같음	위원의 수 명확화
<신 설>	**제89조2(행동강령)** ①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이사장,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사립학교법」 제72조의5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한다.	사립학교법 제72조의4 및 제72조의5 반영

간 서 명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92조((본부조직) ① 수원대학교에 교무처·입학처·교육혁신처·국제협력처·학생지원처·취업지원처·총무처·대외협력처·연구처·기획처·미래전략실·경영관리실·비서실·홍보실·법무감사실·학군단 등을 둔다.	**제92조(본부조직)** ① 수원대학교에 교무처·입학처·교육혁신처·국제협력처·학생지원처·취업지원처·총무처·대외협력처·연구처·기획처·미래전략실·경영관리실·비서실·홍보실·법무감사실·학군단·미래교육혁신단 등을 둔다.	
제93조(단과대학 및 대학원) ① 수원대학교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각각 학장 및 대학원장을 둔다. ② 제1항의 각 학장 및 대학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④ 생략	**제93조(단과대학 및 대학원)** ① 수원대학교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각각 학장 및 대학원장을 둔다. ② 제1항의 각 학장 및 대학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정관 91조1항과 일치 적용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43조1항에 관한 학교장의 임기는 정관 개정 후 학교장 임용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수원대학교의 미래교육혁신단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간 서 명			

의장 이찬영 : 이상으로 이사회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다고 말하고, 여상원, 강인수, 정진호 이사를 호선하여 회의록에 간서명 할 것을 전체이사에게 동의 받고, 2022년도 학교법인 고운학원 제7차 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2022년 9월 28일

위 사실을 확인함

의 장 이 찬 영	
이 사 여 상 원	
이 사 강 인 수	
이 사 정 진 호	
이 사 변 윤 석	
이 사 임 수	

간 서 명			